

# 한국정보과학회 차기회장 선거규칙

1982년	4월 22일	제정
1990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1996년	4월 19일	일부 개정
1998년	10월 31일	일부 개정
2001년	6월 22일	일부 개정
2004년	10월 22일	일부 개정
2008년	6월 13일	일부 개정
2009년	10월 15일	일부 개정
2010년	8월 19일	일부 개정
2012년	11월 23일	일부 개정
2014년	12월 19일	일부 개정
2017년	11월 10일	일부 개정
2018년	6월 8일	일부 개정

##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에 의거 차기회장의 선거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차기회장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제 3 조(임 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에 의하여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이사회에 선거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한다.

## 제 4 조(재 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을 학회에 청구 영달 하여 충당한다.

## 제 5 조(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우리 학회 다음 각 항의 활동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 ① 부회장
- ② 이사
- ③ 지부장
- ④ 소사이어티 회장
- ⑤ 연구회 운영위원장
- ⑥ 위원회 위원장

2. 차기회장 입후보 등록일 현재 10년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3. 입후보 연도를 포함하여 차년도, 차차년도에 본 학회와 관련성이 많은 학회의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을 중임하는 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학회 관련성의 해석과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조**(차기회장 선출 방법) 차기회장은 다음 순서와 방법으로 선출한다.

- ① 차기회장 선거 공고는 투표시작일 기준으로, 前 30일~60일 사이에 하여야 한다.
- ② 차기회장은 차기회장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종신회원과 2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③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투표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자기 소개서 및 출마소견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④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차기회장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⑤ 선거시작일 익일부터 선거종료 후 익일까지 전일 기준의 총 투표율을 학회 홈페이지 및 선거시스템에 매일 공고한다.
- ⑥ 차기회장은 차기회장의 임기시작 20일 전까지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⑦ 입후보자 수가 1인인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7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총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에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⑧ 제7항에 의거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에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 7 조**(입후보자 선거운동)

차기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 6. 8.)부터 시행한다.